

## 서 면 답 변 서

질의 의원	김재영 의원	소속 위원회	총무사회위원회
심사 안건명	제70회 임시회 업무보고(사회복지과) - '98. 9. 30 -		
질의 주요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용자실적 저조(50%)에 대한 대처방안		
<p>▣ 용자실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97년도 : 345,000천원 (용자율 95%)</li> <li>○ '98년도(현재) : 192,000천원 ( " 50%)</li> </ul> <p>▣ 용자실적이 저조한 사유(문제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상 보증인의 거주지 제한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보증인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명으로 제한되어 있음.</li> <li>- '97년까지는 조례상의 사유가 크게 문제화 되지 않았으나 IMF이후 경기침체로 보증인 구하기가 힘든 상태며, 특히 우리구에 거주하는 2명의 세대주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.</li> <li>※보증인 : 2명(인적보증1, 물적보증1-은행여신규정상 재산세 2만원 이상자)</li> </ul> </li> </ul> <p>▣ 해결방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례개정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98. 10. 8자 법제심사후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음.</li> <li>- 구의회 정기회시 상정 계획임.</li> </ul> </li> <li>○ 지속적인 홍보 강화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동 및 홍보매체를 통한 용자홍보 강화</li> </ul> </li> </ul>			